

의안 번호	126
----------	-----

보훈회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보훈회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3. 06. 07.

전문위원 김 동 성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나. 의안번호 : 제126호

다. 제출일자 : 2023. 05. 23.

라. 회부일자 : 2023. 05. 25.

2. 제안이유

- 우리구 보훈대상자 복지증진 및 보훈단체 육성발전을 도모하고자 운영되고 있는 성북구 보훈회관의 위탁기간 만료일(23.6.30)이 도래함에 따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 대상시설

- 시설명 : 성북구 보훈회관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30
- 규 모 : 토지 992㎡, 건물 1,215㎡ (지하1층/지상3층)

나. 위탁기간 : 2023. 7. 1. ~ 2026. 6. 30.(3년)

다. 위탁방법 : 재계약,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의결

라. 위탁사무 :

- 보훈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위탁자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5. 검토의견

□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성북구 “보훈회관”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운영에 관한 사무를 계속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주요내용

- 2023.06.30.자로 성북구 “보훈회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보훈회관 운영을 위해 보훈회관에 입주한 보훈단체로 구성된 현 수탁체인 보훈회관 운영위원회를 대상으로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3년간 재계약을 추진하려는 것임. 위탁대상 현황은 다음과 같음.

<성북구 보훈회관 현황>

시설명	시설현황	소요예산	위탁기간	운영주체	운영조직
성북구 보훈회관	- 위치 : 성북구 화랑로 130 - 규모 : 토지 992㎡, 건물 1,215㎡ (지하1층/지상3층)	213,417천원 (구비)	2021.7.1. ~ 2023.6.30.	성북구 보훈회관 운영협의회 (대표 최백순)	총 4명 - 관장 1 - 직원 3

<시설현황>

구 분	면 적(㎡)	사용면적
계	1,215.59	666.37
3층	244.75	대강당
2층	307.22	사무실 6개 - 상이군경, 미망인회, 월남전참전자회, 6.25참전, 무공수훈자회, 유족회
1층	259.67	사무실 4개 - 관장실, 특수임무수행자회, 광복회, 고엽제
지층	403.95	편의시설 3개 - 체력단련실, 목욕탕, 탈의실

□ 민간위탁의 적정성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1)에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국가보훈단체(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5조2)에서는 입주 자격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설의 특수성 및 입주단체의 자율성 보장 등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입주 보훈단체 상호간 협의를 통해 관리 운영됨이 타당하다 사료됨.
- 또한 보훈회관은 개관(2007. 8. 13.)부터 현재까지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에서 운영 목적에 맞게 다년간 운영해 왔으며, 그간의 업무수행 경험과 관리의 연속성을 위하여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에 재계약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입주단체 현황은 다음과 같음

<보훈단체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광복회	상 이 군경회	유족회	미망 인회	무궁 수훈	특수 임무	고엽제 전우회	6.25 참전	베트남 참전
지회장	9	백태규	양승훈	고동진	최백순	차말근	김정환	이철성	이영우	이재성
회원수	5,376	81	970	544	453	807	23	327	607	1,564

- 위탁기간은 보훈회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였는데, 이는 「민간위탁 조례」 제10조3)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다 사료됨.

-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국가보훈단체(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 2) 제5조(운영협의회) ① 보훈회관에 입주한 보훈단체의 구 지회장들은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보훈회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계약체결 등)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상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고 있는바, 본 사무의 재계약 추진은 타당하다 사료됨.
- 다만, 민간위탁 종료 시한(2023.6.30.)을 앞두고 재계약 동의안이 제출되어 심사보류 및 부결이 될 경우 사업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행정의 적기성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됨.